瑞山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運 營 委 員 會
2000. 2. 7

1. 審査經過

가. 發意日字 : 2000. 2. 1

나. 發 意 者 : 가대현 의원외 10인

다. 回附日字 : 2000. 2. 1

라. 上程日字 : 2000. 2. 7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賈大鉉 議員)

가. 提案理由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토록 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制定)된 서산시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절차를 규정한 조례로써,

○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 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34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 . (제 회)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 의 자	가대현 의원외 10인
발의년월일	2000. 2.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34호

발의년월일 : 2000. 2. 1
발 의 자 : 가대현의원외 10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및 제19조의4(정례회의 집회일등)
-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감사)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생 략)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⑤(생 략)	제2조(감사) ①(현행과 같음) ②----------제1차 정례회--- ---------- ---------- ---------- ---------- ---------- ③~⑤(현행과 같음)